

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찬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7.

발의자 : 이찬열 · 황주홍 · 김종회

전재수 · 오제세 · 전혜숙

박재호 · 임종성 · 안규백

김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

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
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 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(안 제31조).

법률 제 호

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중 “10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별칙)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<u>100만원</u>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	제31조(별칙)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0만원</u> -----.